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알기 쉬운 위임·위탁·대행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목 차

① 권한의 이관방식과 책임소재에 따른 구분	1
②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1
③ 위임 · 위탁 · 민간위탁 · 대행의 비교	2
④ 권한대행 · 대행 · 직무대리 및 내부위임	3
⑤ 위임 규정을 입법하는 방법	4
⑥ 위임 관련 자치입법의 실제	5
⑦ 위탁 규정을 입법하는 방법	7
⑧ 재위임 · 재위탁	11
⑨ 영조물의 설치·운영과 위탁 규정	11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12

권한의 위임 · 위탁 · 대행 등

1 권한의 이관방식과 책임소재에 따른 구분

-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 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대 행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의 수행만을 맡기는 것

2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 위임 · 위탁에 관한 법률 규정
 - 일반규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¹⁾
 - 특별규정 : 개별 법률에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

1)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임에 관한 자치법규

- 일반규정 :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 특별규정 : 개별 조례에서의 위임에 관한 규정

○ 위탁·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

- 일반규정 : 「사무위탁 조례」
- 특별규정 :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서의 위탁에 관한 규정

⇒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 재위임 등은 권한의 법적 소재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행정규칙으로 규정은 불가>

3 위임·위탁·민간위탁·대행의 비교

구분	위 임	위 탁	민간위탁	대 행
권한 이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 수임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 위임기관 권한상실 -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임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 위탁기관 권한상실 -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 위탁기관 권한상실 -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이전 없음 - 대행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업무처리만을 대행 -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음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기관(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상하관계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행정기관의 장 ※ 동급의 행정기관, 지휘·감독 받지 않는 하부기관 • 광역자치단체장→다른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다른 기초 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 ※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 ※ 계측·검측·검사 등 행정조사관련 분야에서 널리 사용, 사용료·요금 등의 부과·징수에서 활용
지휘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

구분	위 임	위 탁	민간위탁	대 행
사전 승인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 조례 위임규정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 조례 위탁규정 사무위탁 조례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 조례 위탁규정 사무위탁 조례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필요한 경우에 규정

4 권한대행 · 대행 · 직무대리 및 내부위임

- 권한대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
- 대 행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의 수행만을 사무처리에 적합한 자에게 맡기는 것
ex)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차량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직무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직무대리자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사무 처리는 곤란하고, 통상적인 업무의 지속성 차원에서 사무 처리

- 내부위임 : 대외적으로 권한의 이전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수임 관청은 위임관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 전결사항을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하여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을 넘겨줌

【 권한대행 · 대리 · 내부위임 비교 】

구분	권한대행	직무대리	내부위임 (위임전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3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사무전결처리 규칙」
발생사유	• 장기간 공백 상태 - 궐위되거나 사고발생 -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 - 60일 이상 계속 입원 - 선거에 입후보	• 일시적 사유 공백 - 출장, 휴가 등	•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름
직무범위	•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권한을 대행)	• 승인한 범위에서 직무를 대신(통상적 업무의 지속성 차원)	•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름
서명방식	• 권한대행자 임을 표기하고 본인의 서명	• 자치단체장의 성명과 함께 대리인임을 표기하고 본인의 서명	• 위임전결권자 본인의 서명

5 위임 규정을 입법하는 방법

- 법령의 위임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그 시행령에서 위임의 대상기관 및 위임하려는 행정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
- 위임 규정의 입법방식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사항을 규정
 - 조례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 규칙 : 기관위임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 개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위임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능함

6 위임관련 자치입법의 실제

○ 행정권한 위임 방식의 이원화

- ① 일반규정 : 「사무위임 조례」 또는 「사무위임 규칙」에서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 ② 특별규정 : 개별 조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
 - 해당 조례에서 권한을 위임한 경우 「사무위임 조례」에서 별도로 위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 사례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5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사례2 :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

제30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사례 2의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어디에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자치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이나 내부방침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바람직하지 않은 위임방식>
- ⇒ 이와 관련해서 판례¹⁾도 도지사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조례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지 않고 「권한업무처리 지침」 형식으로 위임하였다면, 해당 시장·군수는 단지 동 지침에 따라 도지사의 이름으로 그 허가취소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

1) 대법원 1989.9.12., 89누671 판결 참고 : 동 판례에서는 지침 형식으로 위임을 한 사안을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내부위임' 또는 위임전결의 일종으로 보고 해당 시장·군수는 위임전결의 방식에 따라 도지사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1989.2.14., 88누4645 등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바람직한 위임 규정

- 해당 조례에서는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 실제 구체적인 행정권한의 위임은 「사무위임 조례」 또는 「사무위임 규칙」에서 규정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 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도 사무위임 조례 : 별표 >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 경 정 책 과	7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시행 (수립은 제외한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3조
	8	·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같은 조례 제16조
	9	· 표지	같은 조례 제17조
	10	· 토지매수	같은 조례 제18조
	11	· 주민지원 및 필요한 조치	같은 조례 제19조
	12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34조

○ 위임 규정의 구체화 · 명확화

- 세부적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논란을 사전에 예방

< ○○도 사무위임 조례 : 별표 >

소 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 경 정 책 과		○ 토양정밀조사에 관한 다음 사무	
	1	· 토양정밀조사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2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
	3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8조
	4	· 손실보상	같은 법 제9조
	5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제1항 · 제3항
	6	· 과태료 부과 · 징수 등	같은 법 제32조

7 위탁 규정을 입법하는 방법

○ 위탁 유형

①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규정

②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규정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지방자치법 제151조제1항)

- 별도의 입법방식은 없으며, 상호 협의를 통한 규약을 정하여 위탁 (권한의 이전이 아닌 사무를 대신 처리)
- 위탁절차 : 협의 → 규약 → 고시 → 상급기관 보고 → 위탁

○ 적용범위

- 「사무위탁 조례」는 위탁·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자치법규에 해당
-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경우 해당 조례에서 직접 예외 규정을 마련

○ 위탁기간 (현행 조례상)

-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 필요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 필요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 한 번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갱신할 때마다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협약 체결

⇒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려는 경우 해당 조례에서 특례규정 마련

○ 민간위탁의 선정기준과 대상

-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

○ 지방의회의 사전 통제

- 최근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해당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 제정 증가
- 의회의 사전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한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해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1)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 필요(시설의 관리·운영 및 예산편성 추진사무는 제외)

○ 수탁기관의 선정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절차 준용
-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 선정

○ 협약의 체결

-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한 후 위탁사항을 도보에 게재(행정기관·산하 공공기관은 공증 생략가능)
-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법령·조례가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 가능

※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비용의 지원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의 징수를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위탁 조례」보다는 개별 협약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

1)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① 도지사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개정 2012.5.11.>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무 이외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내 용
<p>민간위탁기준 (위탁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위탁 가능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 사전동의 대상 검토
<p>수탁기관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선정 •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 원칙(단, 필요한 경우 자격제한 가능)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수탁기관 신청자의 사업계획 심의·현장확인 등
<p>위탁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로 하되 연장가능(연장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
<p>지휘·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정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 수탁기관에 사무처리 지침 시달 • 민간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필 •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는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p>협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목적,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의무, 계약위반 시 책임 등을 반영 • 협약서를 공증하고, 위탁사항을 도보에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산하 공공기관은 공증 생략 가능
<p>규정 적용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령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을 따르고 ②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사무위탁조례」를 적용 ③ 「사무위탁조례」는 위탁·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자치법규에 해당하며, 특례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예외 규정 마련

8 재위임 또는 재위탁

- 재위임·재위탁은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 국가사무의 재위임은 「사무위임 규칙」에서 규정

- **재재위임** : 판례에 따라 명시적인 재재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위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 **재재위탁** : 재재위탁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민간위탁은 가능하나, 일반위탁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9 영조물의 설치·운영과 위탁 규정

- 공공영조물은 행정주체에 의해서 계속적인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
 - 철도, 수도, 병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조례로 규정
 - 해당 자치단체의 재산이고, 주민이 이용하며,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세부 운영방법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영조물 운영 위탁 방식(3가지)
 - **재단법인 설립** : 해당 영조물 설치·운영 조례에서 영조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위탁기관을 설치
 -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 : 해당 영조물 설치·운영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탁기관에 위탁
 - **민간위탁** : 해당 영조물 설치·운영 조례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5.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계,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

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